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72호 2021. 1. 12(화)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3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6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 및 예외규정 신설(안 제6조2)
-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제 중 100L 내용을 삭제하고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배출 제한 무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 삭제  
(안 별표 4, 안 별표 6의1, 6의2, 6의3 및 안 별표 9)
-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변경(안 제7조, 별표 3-1)
-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신설(안 제7조의 2)

###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3층
- 전 화 : ☎ (032)560-4932,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4.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등 및 예외규정 신설(안 제6조2)
- 나.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제 중 100L 내용을 삭제하고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배출 제한 무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 다.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규격별 종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및 판매가격 일부 삭제  
(안 별표 4, 안 별표 6의1, 6의2, 6의3 및 안 별표 9)
-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변경(안 제7조, 별표 3-1)
- 마.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신설(안 제7조의 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나. 개 정 안 : 별지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을 “법 제15조제1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표 3”을 “별표 3의1”로 한다.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다. 가정사업계용봉투 125리터: 32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3의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3 및 별표 9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사용 기  
한은 이미 제작된 10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 소진 시까지로 하며, 판매가격 및  
배출무게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 관련)**

품목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가스히터	모든 규격	5,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고무통	대	5,000
골프가방	모든 규격	5,000
기타(악기)	모든 규격	3,000
난로	석유	4,000
다리미판	모든 규격	2,000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쌀통용	4,000
돗자리	모든 규격	5,000
	마작대자리(2인 이상)	10,000
레인지후드	모든 규격	2,000
마네킹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전신용	5,000
문갑(거실장)	모든 규격	6,000
	돌문갑	10,000
	유리(부착)문갑	10,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0
	2.5톤 이상	50,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다과상	2,000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 규격	5,000
병풍	모든 규격	5,000
보드	모든 규격	3,000
부츠	모든 규격	3,000
블라인드	쪽당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 규격	3,000
빨래판	모든 규격	2,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사무용 칸막이(파티션)	모든 규격	5,000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세면대	모든 규격	5,000
소파	유아용	3,000
	소파 테이블	3,000
	보조 소파(스툴)	5,000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 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카우치	10,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수도호스	10미터당	1,000
수족관(어항)	소(1m 이하)	3,000
	중(1.5m 이하)	5,000
	대(1.5m 초과)	8,000
스탠드 벽시계	모든 규격	5,000
스키	모든 규격	3,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6인용 미만(대리석)	10,000
	6인용 이상(대리석)	12,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신발장	소(높이 1.5m 미만)	3,000
	대(높이 1.5m 이상)	6,000
실내운동기구	자전거(플라스틱)	5,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10,000
싱크대	소(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상부장(플랜장, 후드)	5,000
실링팬(전등)	모든 규격	5,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안내카운터(데스크)	중(가로 1.5m 미만)	8,000
	대(가로 1.5m 이상)	10,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10,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중(대각선 1m 미만)	3,000
	대(대각선 1m 이상)	5,000
여행용가방	소(기내용)	3,000
	대(화물용)	5,000
오르간	모든 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 규격	11,000
온수매트	1인용	9,000
	2인용	10,000
욕조	모든 규격	10,000
우산	모든 규격	1,000
유리(쪽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	10,000
유모차, 보행기	모든 규격	3,000
유아용 전동차	모든 규격	5,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4,000
의자	모든 규격	4,000
자전거	자전거(유아용)	3,000
	자전거(어린이)	4,000
	자전거(일반)	5,000
장롱(1쪽당)	프레임(틀)	5,000
	너비 90cm 이하	8,000
	너비 90cm 초과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장식장,진열장	소(길이 60cm 미만)	4,000
	중(길이 90cm 미만)	6,000
	대(길이 90cm 이상)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모든 규격	5,000
전기장판	모든 규격	6,000
창문	모든 규격	3,000
책상	상판	3,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h형책상(상판, 책장, 서랍 포함)	10,000
	사무용	10,000
책장(책꽂이)	3단 미만	5,000
	3단 이상	6,000
천막	가정용	6,000
침대(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3,000
	1인용	8,000
	2인용	9,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침대매트판	플라스틱 1개당	2,000
	나무 1개당	5,000
침대머리	모든 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퀵사이즈 포함)	4,000
	유아용 침대	5,000
	2층 침대틀	10,000
	돌침대(돌 포함)	12,000
	모텔용	12,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칼라박스	모든 규격	2,000
캐비닛	모든 규격	5,000
고양이 타워	소(높이 1.5m 미만)	5,000
	대(높이 1.5m 이상)	10,000
타이어	600mm 이상	5,000
	1,100mm 이상	12,000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테니스라켓	개당	1,000
텐트	가정용	2,000
팔레트(나무)	모든 규격	5,000
폴더매트	3.3㎡(1평)당	8,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소형	6,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항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이상)	5,000
협탁(서랍 없음)	모든 규격	2,000
화장대	가정용	6,000
	업소용	10,000
화환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휠체어	모든 규격	2,000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7조 관련)**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li>※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li> </ul>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li> </ul>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ul>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ul> <p>※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p>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p>※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ul>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li>-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바.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li> <li>※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              ·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li> </ul>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li> <li>※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li> </ul>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li>※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li> <li>※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의류</li> <li>• 기타 의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성 섬유(면, 마 등)</li> <li>•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li> <li>•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우레탄 등)</li> <li>• 기타 합성섬유류</li> </ul>	
차.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li> </ul>
카.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li> </ul>

##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종류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li> </ul>
	금속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캔, 알미늄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캔류(부탄가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ul>
	합성 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플라스틱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li> </ul>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li> </ul>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료수병, 기타병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ul>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신문지, 상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li> <li>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ul>
	합성수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티로폼 완충재</li> </ul>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은, 망간전지</li> </ul>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가전</li> </ul>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광등</li> </ul>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

-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휴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제7조의2와 관련)**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2.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0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100	71×113.5	공공용봉투
125	80×120	가정사업계용봉투

-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〇〇ℓ, 〇〇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또는 무게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〇〇〇-〇〇〇〇)

서구 시설관리공단(☎ 〇〇〇-〇〇〇〇)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1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 ℓ )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ℓ, 125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 또는 ○○○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양탄자, 보온재, 폐목재,오니류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ℓ:15kg 이하, 125ℓ:32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서구청 자원순환과(☎ ○○○-○○○○)

서구 시설관리공단(☎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3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 ℓ	160원	12원	148원
		10 ℓ	310원	25원	285원
		20 ℓ	620원	49원	571원
		50 ℓ	1,540원	123원	1,417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 ℓ	1,870원	150원	1,720원
		60 ℓ	3,710원	290원	3,420원
		125 ℓ	7,660원	610원	7,050원
스티커	대형 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에서 고무, 피혁, 섬유, 재활용 가치가 상실된 스티로폼 등과 같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등으로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배출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 8.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4.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신 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 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 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  
-----  
--.

1. -----



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생 략)

② (생 략)

<신 설>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

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  
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  
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  
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78호

##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97호(2020.6.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사업명: 검단신도시 우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담당관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마전동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하수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2-2번지 일원	-	3,089	3,089	-	

## ○ 압송관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 결정일	초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가	하수도	불로동 52-2	마전동 1096	광로 3-27호	4.89	4,374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하수도 (중계펌프장)	○ 신설 - 면적: 3,089㎡	○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3단계 구역 오수와 인근 지역(마전, 불로 등)의 오수를 검단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오수중계펌프장과 압송관로를 신설함.
가	하수도 (압송관로)	○ 신설 - 연장: 4,890m - 면적: 4,374㎡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 명칭 : 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연장 (m)	면적 (㎡)	비고
신설	중계 펌프장	-	3,089	
신설	압송 관로	4,890	4,374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06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기획담당관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김단신도시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성명	유 주 소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175	불로동	52-2	답	1,779.0	832.00	김*영	인천 계양구 서운동 *-*				
2	176	불로동	52-1	답	3,037.0	2,144.00	황*미	전라남도 영광군 흥농읍 상하리 ***				
3	177	불로동	52	답	975.0	153.00	최*호	인천 계양구 용종동 *****				
4	4	불로동	51-4	답	1,967.0	18.00	이*레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				
5	5	불로동	51-5	답	640.0	6.00	박*배	서울 은평구 갈현로36길 *-**				
6	6	불로동	51-3	답	1,328.0	12.00	박*배	서울 은평구 갈현로36길 *-**				
7	7	불로동	51-2	답	2,916.0	27.00	국토교통부					
8	8	불로동	51-1	답	1,014.0	9.00	김*술	인천 계양구 병방동 *****				
9	9	불로동	51	답	4,003.0	36.00	조*인	인천 부평구 부개동 *****				
10	10	불로동	50-3	답	4,007.0	37.00	윤*	인천 계양구 장제로920번길 **				
11	11	불로동	50-2	답	3,960.0	36.00	이*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12	12	불로동	50-1	답	5,567.0	50.00	김*영	***				
13	13	불로동	50	과	3,307.0	29.00	김*환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 *****				
14	14	불로동	50-4	과	3,307.0	30.00	김*갑	김포시 감정동 산*				
15	15	불로동	48-6	과	2,819.0	27.00	박*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첫섬로 ***				
16	16	불로동	48-3	과	2,645.0	25.00	박*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17	17	불로동	48-2	대	658.0	17.00	이*호	인천 서구 마전동 *****				
18	18	불로동	48-7	전	1,495.0	4.00	이*호	인천 서구 마전동 *****				
19	20	불로동	48-8	답	2,602.0	32.00	황*진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번길 **				
							허*숙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번길 **				
20	21	불로동	48-5	전	3,915.0	44.00	김*중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				
21	22	불로동	415-4	도	132.0	1.00	김*식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				
22	23	불로동	415-5	답	192.0	2.00	기획재정부					
23	24	불로동	415-6	도	579.0	7.00	인천광역시서구					
24	25	불로동	415-22	도	192.0	4.00	이*중	검단면 불로리 **				
25	26	불로동	570-12	구	1,106.0	4.00	농림축산식품부					
26	27	불로동	59	답	4,110.0	41.00	이*자	인천 서구 가현로*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27	28	불로동	59-1	답	1,533.0	18.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블럭*-*롯데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선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장*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류*남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28	29	불로동	59-2	답	2,346.0	32.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선	인천광역시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장*자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블럭*-*롯데					
29	30	불로동	570-2	구	419.0	5.00	농림축산식품부						
30	31	불로동	61	답	3,616.0	37.00	김*호	인천 연수구 연수1동 ***					
							김*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김*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장*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					
							김*호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블럭*-*롯데					
31	32	불로동	61-1	답	2,158.0	21.00	김*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					
32	33	불로동	61-2	답	1,538.0	15.00	문*중	***					
33	34	불로동	61-7	답	1,141.0	11.00	문*중	인천 서구 불로동 ***-*					
34	35	불로동	61-8	전	1,694.0	25.00	문*식	인천 서구 검단로 ***(불로동)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35	36	불로동	61-5	답	1,116.0	25.00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불로동)				
36	37	불로동	409	전	1,311.0	12.00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37	38	불로동	409-1	전	2,029.0	19.00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38	39	불로동	409-4	도	1,342.0	11.00	인천광역시					
39	40	불로동	570-3	구	563.0	5.00	농림축산식품부					
40	41	불로동	409-8	도	1,570.0	13.00	인천광역시					
41	42	불로동	409-5	도	77.0	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번지)				
42	43	불로동	409-2	전	1,656.0	1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3	44	불로동	570-4	도	802.0	8.00	농림축산식품부					
44	45	불로동	409-3	전	2,127.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5	46	불로동	410-1	과	5,417.0	5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6	47	불로동	570-5	구	657.0	6.00	농림축산식품부					
47	48	불로동	410-2	전	1,250.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8	49	불로동	410-3	전	2,376.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49	50	불로동	410-4	전	5,140.0	4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0	51	불로동	410-5	답	2,565.0	2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1	52	불로동	570-10	구	362.0	5.00	농림축산식품부					
52	53	불로동	410-6	답	2,088.0	3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3	54	불로동	423	답	491.0	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4	55	불로동	423-1	답	1,880.0	3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5	56	불로동	423-2	답	376.0	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6	57	불로동	423-3	답	1,566.0	3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7	58	불로동	570-25	도	1,280.0	5.00	농림축산식품부					
58	59	불로동	423-9	전	1,068.0	3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59	60	불로동	423-5	답	2,532.0	3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0	61	불로동	423-6	답	866.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1	62	불로동	424	답	794.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2	63	불로동	424-1	답	482.0	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3	64	불로동	424-2	전	3,183.0	2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4	65	불로동	570-7	구	866.0	3.00	농림축산식품부					
65	66	불로동	424-3	답	1,855.0	1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6	67	불로동	424-4	답	1,386.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7	68	불로동	425	전	3,276.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68	69	불로동	568	구	10,662.0	69.00	농림축산식품부					
69	70	불로동	465-3	답	2,942.0	5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0	71	불로동	568-1	도	7,910.0	16.00	농림축산식품부					
71	72	불로동	569-3	구	264.0	4.00	농림축산식품부					
72	73	불로동	465-2	답	2,893.0	8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3	74	불로동	569-4	구	584.0	7.00	농림축산식품부					
74	75	불로동	464-4	전	2,488.0	4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5	76	불로동	575-1	구	1,102.0	16.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연번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76	77	불로동	577-4	대	1,556.0	4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7	78	불로동	577-5	임	1,339.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8	79	불로동	577-10	과	194.0	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79	80	불로동	577-8	과	384.0	1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0	81	불로동	566-1	전	276.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1	82	불로동	581-1	도	2,201.0	1.00	인천광역시서구					
82	83	불로동	산103	임	1,388.0	16.00	인천광역시서구					
83	84	불로동	산109-1	도	992.0	5.00	국토교통부					
84	85	불로동	583-1	대	182.0	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5	86	불로동	582-2	대	510.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6	87	불로동	583	대	612.0	15.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7	88	불로동	611-1	답	608.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8	89	불로동	608-2	전	536.0	2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89	90	불로동	608-3	구	301.0	1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0	91	불로동	608-4	전	460.0	1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1	92	불로동	608-6	답	1,749.0	1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2	93	불로동	611-3	답	2,231.0	2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3	94	불로동	608-8	답	2,009.0	3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4	95	불로동	608-20	답	231.0	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5	96	불로동	608-21	대	264.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6	97	불로동	608-16	대	1,347.0	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7	98	불로동	608-14	답	390.0	2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98	99	불로동	604-14	잡	243.0	3.00	국방부					
99	100	불로동	746-1	구	1,747.0	19.00	국토교통부					
100	101	불로동	622-42	잡	757.0	3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1	102	불로동	622-15	잡	1,696.0	5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2	103	불로동	622-5	잡	2,835.0	68.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3	104	불로동	622-14	잡	2,268.0	4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4	105	불로동	622-28	잡	2,971.0	31.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5	106	불로동	622-27	잡	177.0	10.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6	108	불로동	622-19	잡	7.0	3.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7	109	불로동	622-30	잡	1,279.0	49.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8	110	불로동	622-29	잡	203.0	7.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9	111	불로동	623-12	구	259.0	1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0	112	불로동	636-4	대	165.0	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1	113	불로동	622-34	잡	2,679.0	8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08	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12	114	불로동	622-33	잡	2,271.0	4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3	115	불로동	667-22	답	478.0	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4	116	불로동	667-4	답	1,710.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5	117	불로동	667-29	대	128.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6	118	불로동	667-12	대	6.0	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7	119	불로동	667-9	대	611.0	4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8	120	불로동	667-26	대	292.0	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19	121	불로동	667-25	도	1,788.0	6.0	인천광역시서구					
120	122	불로동	681-1	전	289.0	26.0	인천광역시서구					
121	123	불로동	682-11	도	713.0	14.0	인천광역시서구					
122	124	불로동	682-8	도	958.0	2.0	인천광역시서구					
123	125	불로동	667-2	전	328.0	1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4	126	불로동	750-10	천	151.0	3.0	국토교통부					
125	127	불로동	748-4	도	160.0	5.0	국토교통부					
126	128	불로동	720-11	구	786.0	12.0	농림축산식품부					
127	130	불로동	516-8	답	446.0	1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8	131	불로동	516-9	답	217.0	1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29	132	불로동	516-12	답	256.0	2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0	133	불로동	720-22	구	252.0	33.0	농림축산식품부					
131	134	불로동	516-17	답	127.0	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2	135	불로동	516-16	답	15.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3	136	불로동	516-28	답	131.0	1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4	138	불로동	516-18	답	463.0	6.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5	139	불로동	516-19	답	628.0	2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6	140	불로동	516-23	답	628.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7	141	불로동	517-21	답	698.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8	142	불로동	517-24	답	621.0	28.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39	143	불로동	517-26	답	117.0	4.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0	144	불로동	720-16	구	258.0	1.0	농림축산식품부					
141	145	불로동	720-3	구	34.0	4.0	농림축산식품부					
142	146	불로동	517-10	답	200.0	1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3	147	불로동	517-11	전	214.0	1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4	148	불로동	517-25	전	362.0	1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5	149	불로동	517-2	전	1,665.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6	150	불로동	517-27	답	1.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7	151	불로동	517-4	답	309.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8	152	불로동	517-34	답	7.0	2.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49	153	불로동	517-28	답	97.0	1.0	인천광역시					
150	154	불로동	517-32	답	1,544.0	25.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1	155	불로동	517-18	답	439.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2	156	불로동	517-5	답	335.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3	157	불로동	517-29	답	137.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0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성명	유 주 소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면또 는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54	158	불로동	517-6	답	233.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5	159	불로동	720-8	구	1,467.0	13.0	농림축산식품부					
156	160	불로동	750-4	천	1,434.0	7.0	국토교통부					
157	161	불로동	724-5	답	140.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8	162	불로동	724-4	답	91.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59	163	불로동	724-6	전	1,435.0	4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0	164	불로동	724-14	답	2,369.0	5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1	165	불로동	724-28	답	882.0	37.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2	166	불로동	724-23	대	358.0	1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3	167	불로동	725-10	대	395.0	1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4	168	불로동	725-7	답	145.0	1.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5	169	불로동	725-17	대	207.0	9.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6	170	불로동	725-13	답	642.0	20.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7	171	불로동	725-15	대	895.0	13.0	인천도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168	172	마전동	1096	도	36,512.9	754.0	인천광역시					
169	173	당하동	1116	도	22,672.7	194.0	인천광역시					
170	174	마전동	628-3	도	11,166.0	365.0	인천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해당없음)